

# 성차별 언어와 대안어의 성격

##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2020)의 ‘성평등 단어’를 대상으로-

김소영\*

### 〈차 례〉

1. 서론
2. 성차별 언어와 〈성평등〉의 ‘성평등 단어’
3. 성차별어의 성격과 성차별어 선정 시 고려할 점
4. 대안어의 성격과 대안어 선정 시 고려할 점
5. 결론

### [국문초록]

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차별 언어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는 작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성차별어는 차별 언어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적극적인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해 온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2020)역시 그러한 성격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된 성차별어는 크게 남성을 중심으로 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유형,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하는 유형, 여성 관련 단어 중 사회적 인식 및 관점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편 성차별어의 대안어는 제3의 단어로 기존 성차별어를 대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성별 제거, 성별 통합, 표현 대칭화 역시 대안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차별어를 선정함에 있어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어의 의미를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지와 비유적 표현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관련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대안어의 선정 과정에서는 대안어가 기존 차별 언어의 원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대안어 자체가 의미 분화의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차별 언어에 대한 대안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대안어를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어를 만드는 방향성을 논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조교수

[주제어] 대안어, 차별 언어, 순화어, 성차별 언어,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비혼, 출생율

## 1. 서론

본고에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이하 <성평등>)에서 제안된 성차별적 언어의 대안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언어의 차별적 성격과 이의 대안어로 제시된 ‘성평등 단어’의 차별성 제거 방식을 검토하고, 차별 언어와 대안어 선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차별적 언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어를 선정하여 보급하려는 움직임들이 학계, 시민 단체, 국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언어가 반드시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언어 표현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 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기를 희망하는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 언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언어와 관련된 현실적인 한계들을 적극적으로 면서도 인위적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성평등> 역시 서울시 출연 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 속 혹은 법률 용어 등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 표현의 대안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띤다.

성차별어는 차별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타 차별 언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주목을 받은 편이며(이정복 2014: 61), 성차별어에 대한 대안어 역시 다른 종류의 차별 언어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마련되고

1) 차별적 언어의 차별성을 제거하여 새로운 말을 골라 내는 작업은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언어 순화’ 작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조태린(2019: 125)에서는 차별적 표현의 개선이 기존의 국어 순화 또는 언어 순수주의의 관점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언어 인권과 차별’이라는 개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순화와는 다른 독립된 범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세부적인 속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범주의 언어를 인위적으로 교정해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별 언어의 개선은 순화 운동적 속성을 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성차별어 연구에서는 성차별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언어가 성차별어인지, 또 어떠한 점에서 성차별적인지를 유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논의의 주를 이루어 왔으며(조태린 2006; 이정복 2007; 안상수 외 2007; 박은하 2008 등), 대안어의 성격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었다.

이는 차별 언어의 대안어가 인위적인 언어 교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 대안어의 적합도나 정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점과도 관련되는 듯하다. 특히 차별 언어는 언중들이 그 단어나 표현이 차별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정 언어 표현이 차별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큰 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무엇이 차별 언어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당대의 가치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때(박동근 2014: 86), 당대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대안어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안어의 적합성 자체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차별 언어의 대안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성차별어의 대안어가 다양한 경로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안어로 제시된 언어 표현의 성격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떠한 언어 표현이 차별적이라는 ‘평가’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언어 표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언어 표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기존 언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조태린(2011: 407~408)의 지적과 같이 ‘언어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기존의 언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어의 존재는 차별 언어에 대한 문제 의식과 대체 표현에

대한 용인도를 높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대안어가 성차별 언어 표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어는 기존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거하여 만들어 지는지를 <성평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언어적 관점에서 대안어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을 살핌으로써 차별 언어 개선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성차별 언어와 <성평등>의 ‘성평등 단어’

### 1) 성차별 언어

차별 언어란 ‘한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 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조태린 2011: 389)<sup>2)</sup>을 말한다.<sup>3)</sup> 이러한 차별 언어는 차별의 대상의 범주에 따라 하위 구분되는데, ‘성, 신체, 인종/국적/지역, 직업/사회’(조태린 2006: 28)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이정복(2014)의 경우 ‘종교’를 그 하위 범주에 넣기도 하는데, 이처럼 차별 언어의 하위 범주는 차별과 차별 언어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외연이 서로 조금씩은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주와 달리 ‘성차별’의 경우는 모든 연구들에서 차별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있어, 성차별 언어가 차별 언어의 한 종류라는 데에는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sup>4)</sup>

2) 이는 조태린(2011)에서는 ‘차별 언어’가 아닌 ‘차별적 언어 표현’의 정의로 든 것이나, 본고에서는 ‘차별 언어’라고 약칭한다.

3) 차별 언어에 대한 정의나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정일(2004: 71)에서는 ‘차별적 언어표현이란 받아들이는 입장과 말하는 입장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맥이나 의도, 단어의 의미에 명시와 차별의 관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정복(2014: 36~37)에서는 ‘차별 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4) 후술하겠으나 차별 언어를 보는 입장에 따라 성차별 언어가 어떻게 하위 유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차별으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어떤

이러한 성차별 언어는 다시 차별의 이유에 따라 하위 부류화 된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성차별 언어의 종류를 몇 개 소개하면 (1)~(3)과 같다.

(1) 조태린(2006: 28)

조사 이유	내용	보기
여성명칭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미혼모, 미망인
여성강조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의사, 여대생, 여기자
신체강조	여성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림, 처녀작, 처녀생식
고정관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반영	시집가다, 바깥사돈, 남녀
여성비하	여성을 비하	계집애, 마누라

(2) 안상수 외(2007: 25~28)

- 가.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형제애, 스포츠맨, 자매결연, 남녀, 자녀, 부모 등
-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여류명사, 여의사, 여성총리, 남자간호사 등
-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숫처녀, 미망인, 백치미 등
- 라. 선정적 표현: 흑진주, 꽃미남, S라인 등
- 마. 특정 성 비하: 여편네, 솔뚜껑 운전수, 제비족 등

(3) 이정복(2014: 40~42)

가. 언어 형식적 분류

- ① 여성을 유표형으로 지시: 여교사, 여비서 등

---

단어의 성격이 차별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동근(2021: 159)에서는 ‘성차별 언어’의 범주에 ‘남성 차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성차별을 특정 성(여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 차별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성차별’을 ‘여성 차별’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양성 차별’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라도 성차별어의 하위 범주 및 세부 차별 언어 항목이 달라지게 되는 셈인데, 이처럼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된 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차별 언어의 경우도 구체 사례로 가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 ② 남성을 먼저 지시: 남녀, 부모, 아들딸 등
- ③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포괄: 형제, 학부형, 부전자전 등

나. 차별 내용 분류

- ① 여성을 남성애 종속된 존재로 보기: 여필종부, 미망인 등
- ②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 여태, 뒤태, 관능미, 꿀벅지 등
- ③ 여성의 성품과 능력을 낮잡아 표현: 암탉, 암개, 불여우 등
- ④ 남성을 부정적으로 표현: 늑대, 머슴, 마초

(1)~(3)을 종합하면 대체로 1)여성을 유표형으로 지시하는 표현, 2)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표현, 3)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4)남성을 먼저 지시하는 표현 등을 성차별 언어의 하위 분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정적인 표현’과 같은 일부 표현들은 연구자에 따라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평등>에서 제안된 ‘성평등 단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8년~2020년의 3년간 성평등 주간(9월 1일~7일)에 맞추어 성차별어 및 그의 대안어를 선정하여 ‘성평등 단어’라는 이름으로 홍보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제안된 대안어는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은 것들을 대상으로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4~6). 2018년과 2019년에 선정된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성차별 말’이라는 주제로 응모된 것이며(4, 5), 2020년에는 ‘법령, 행정 용어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성차별 언어’라는 주제로 응모된 것으로(6) 총 31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2020년에 다시 제안된 ‘미혼 → 비혼, 유모차 → 유아차, 부녀자’는 2018년과 2019년에 제안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28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의 조사 내용은 법령 등에 포함된 어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과 같이 비 일상어들이 포함되어 있

기도 하여 2018년, 2019년 등의 항목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2018년 선정 단어(10항목)

유모차 → 유아차, 여직원 → 직원, 처녀작 → 첫 작품,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그녀(女) → 그, 저출산 → 저출생, 미혼 → 비혼, 몰래카메라 →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 디지털 성범죄, 자궁 → 포궁

(5) 2019년 선정 단어(10항목)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승하차장, 분자·분모 → 윗수·아랫수, 김여사 → 운전미숙자, 경력단절여성 → 고용중단여성, 수유실 → 아기집터·아기휴게실, 버진로드 → 웨딩로드, 부녀자 → 여성, 낙태 → 임신중단, 스포츠맨십 → 스포츠정신, 효자상품 → 인기상품

(6) 2020년 선정 단어<sup>5)</sup>(11항목)

가. 법령, 행정 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 언어

학부형 → 학부모, 저출산 → 저출생, 자·양자·친생자 → 자녀·양자녀·친생자녀, 미혼·미혼모·미혼부 → 비혼·비혼모·비혼부, 유모차 → 유아차, 미숙아 → 조산아, 자매결연 → 상호결연, ‘침을 둔 사람’ → 삭제, ‘손님의 유흥을 돌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 삭제

나. 법령, 행정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 언어

편부·편모 → 한부모,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성평등〉의 보도자료에서는<sup>6)</sup> 이상의 성차별어와 그 대안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성차별이

5) 밑줄 친 항목들은 2018년, 2019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 중복되는 것들이다.

6)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06.29)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63422?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63422?tr_code=snews)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중 대안 제시가 가능한 것을 선정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공유, 확산되어야 할 단어들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이 대안어들은 성차별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시민이 제한한 성평등 언어가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길 기대’하는<sup>7)</sup> 캠페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sup>8)</sup> 또한 이 대안어를 선정함에 있어서 비속어, 비표준어,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는 단어,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 대안 제시(성평등 언어)가 불명확한 단어, 기존 성평등 언어·생활사전에서 선정된 단어 등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성차별 언어 및 그 대안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3. 성차별어의 성격과 성차별어 선정 시 고려할 점

#### 1) 성차별어의 유형별 분류

이 장에서는 (4)~(6)의 성차별어로 선정된 항목들이 <성평등>에서 성차별어로 간주되는 이유를 그 유형에 따라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들은 크게 [1]특정 성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현, [2]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표현, [3]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여성 관련 표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1]특정 성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현은 아래의 (7), (8)이 해

7) <여교사·유모차'를 '교사·유아차'로...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연합뉴스 2018.06.29)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9056700004>

8) 대안어 자체는 강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나, 다만 이 대안어들의 일부가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문제가 되는 언어 표현을 개선하는 작업들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짐작된다. 서울시에서는 국어사용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서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평등>에서 제시된 단어들의 일부가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학부형 → 학부모, 미혼모 → 비혼모, 수유실 → 야기쉘터,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승하차장, 스포츠맨십 → 스포츠정신). 한편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에 수록된 일부 단어들은 <성평등>과는 다른 대안어가 제시된 경우도 있으며(효자상품 → 알짜상품, 버진로드 → 꽃길), '녹색어머니회 → 녹색학부모회, 부녀회 → 주민회, 직장맘 → 여성직장인'과 같이 <성평등>에서는 제안되지 않은 순화어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된다.

(7)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직원 → 직원,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그녀(女) → 그

(8) 한쪽 성별을 대표형으로 사용함

가. 남성을 대표형으로 사용

스포츠맨십 → 스포츠정신, 자·양자·친생자 → 자녀·양자녀·친생자

녀, 자궁 → 포궁, 효자상품 → 인기상품

나. 여성을 대표형으로 사용

자매결연 → 상호결연

특정 성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현은 한쪽 성별을 기준으로 다른 성별을 추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체를 모두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7)은 성별을 표시하는 ‘여’를 붙여서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형이다. 다만 여기에서 ‘그녀’의 경우 ‘녀(女)’가 여성임을 유표적으로 드러내 주기 때문에 ‘녀(女)’를 삭제하여 여성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을 교정하지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여직원, 여자고등학교’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고 보인다.<sup>9)</sup>

한편 (8)은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이 한쪽 성별을 대표형으로 삼아서 전체를 포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8가)와 같이 ‘스포츠맨’, ‘자’, ‘효자’와 같은 남성 표현으로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경우와, (8나)의 ‘자매’와 같이 여성을 대표형으로 하여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의 (9)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유형이다.

9) ‘그녀’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어색함은 ‘그녀’ 자체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 수 있다. ‘그녀’는 20세기 근대문학의 성립 과정에서 실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그녀’는 특정 유형의 문어 텍스트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며, 구어에서는 ‘그녀’를 쓰기 어려운 제약을 가지고 있다(안소진 2015).

## (9)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함

## 가. 출산/육아에 대한 고정관념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승하차장, 수유실 → 아기윅터·아기휴게실,  
유모차 → 유아차, 분자·분모 → 윅수·아랫수

## 나. 가족 구성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 다. 여성 비하

김여사 → 운전미숙자

## 라. 여성의 순결에 대한 고정관념

치녀작 → 첫 작품, 버진로드 → 웨딩로드

(9가)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생각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성차별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맘스스테이션’은 아이들의 등하원 버스 정류소를 지칭하는 말인데, 아이들의 등하원을 엄마만의 역할로 국한시키는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어로 분류되었다. ‘수유실’은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따로 마련해 놓은 방’을 뜻하는데, 아이를 돌보는 방은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를 돌볼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모차’ 역시 엄마를 기준으로 하는 표현이다. ‘분자-분모’는 분수식에서 가로줄 위의 수를 ‘분자’, 가로줄 아래의 수를 ‘분모’라고 하는 것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이해하여 차별적 표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9나)는 행정 서식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서 적도록 한 것에 대하여 ‘처’를 ‘배우자’로 바꾸자고 한 것이다. 전통적 가족 구성에서는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가 많았으나, 가족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남편이 세대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오늘날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다)의 ‘김여사’는 운전을 잘 못하거나 비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운전 미숙한 사람은 나이든 여성이라는 사고

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김여사’와 같은 표현은 차별 언어이기도 하지만 ‘혐오 표현’이라고<sup>10)</sup> 부를 만한 비하의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9라)는 ‘처녀’가 포함된 단어가 ‘처음’의 의미를 상징하는 경우들이다. ‘처녀’가 포함된 표현은 ‘처녀작’ 외에도 ‘처녀비행, 처녀출전, 처녀출판, 처녀항해’ 등 다양한데, ‘처녀’가 포함된 표현들이 다양한 것은 ‘처녀’의 의미가 확장되어 은유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처녀’의 기본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이나 이것이 ‘아무도 손대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파생되어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그 근본적인 발상이 여성만의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와 연결되므로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평가된다.

(10) 여성 관련 용어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몰래카메라 →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 디지털 성범죄

나. 저출산 → 저출생

다. 낙태 → 임신중단, 미숙아 → 조산아, 편부·편모 → 한부모,

경력단절여성 → 고용중단여성

라. 부녀자 → 여성, 미혼 → 비혼

(11) 기타

‘칩을 둔 사람’ → 삭제

(10)은 직접적으로 언어 표현 자체가 성차별적인 함의를 갖는다기보다는, 여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0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몰래카메라’나 ‘리

10) 차별 표현은 ‘혐오 표현’과 함께 언급되는 일이 많다. ‘혐오 표현’은 서구의 ‘hate speech’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별 표현보다 더 직접적인 비하와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다(예: 맘충, 뒤장녀). 차별 표현과 혐오 표현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차별 표현이 혐오 표현의 상위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이정복 2017: 10~11). <성평등>에서 성차별 언어로 선정된 단어들은 혐오 표현적 성격을 띠는 것은 많지 않으나, ‘김여사’가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벤지 포르노'라고 했을 때 범죄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지 않으므로 용어를 개선하고자 한 경우이며, (10나)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저'출산'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실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선 대상으로 제안된 것이다. (10다)는 모두 기존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성격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한다는 의미인 '낙태'를 '임신 중단'으로 고치게 되면 여성이 임신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한다는 의미로 변화된다.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가리키는데,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라는 뜻의 '조산아'로 순화 제안되었다. '편모·편부' 역시 그 자체가 차별적이라기보다는 해당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표현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편모·편부'를 모두 아우르는 '한부모'로 부르도록 제안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은 흔히 임신, 출산 등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여성을 뜻하는데, '단절'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용중단여성'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10라)의 '부녀자'는 <표준>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법률 정책 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녀자'는 남성에 대비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므로 부녀자라는 표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개선이 제안되었다. '미혼'을 '비혼'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은 '미혼'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2-1)의 (1)~(3)에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1)여성을 유표형으로 지시하는 표현 2)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표현, 3)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4)남성을 먼저 지시하는 표현 등을 성차별 언어의 하위 분류로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평등>의 성차별어에는 1), 2), 3)은 포함되어 있으나 '4)남성을 먼저 지시하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대신 '[3]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여성 관련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4)남성을 먼저 지시하는 표현'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대안어의 선정

과정에서 ‘대안어를 선정함에 있어서 비속어, 비표준어,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는 단어,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 대안 제시(성평등 언어)가 불명확한 단어, 기존 성평등 언어·생활사전에서 선정된 단어 등’을 제외한다고 한 바 있는데, ‘남녀’, ‘이들딸’과 같은 표현은 남성 지시 표현이 여성 지시 표현에 비해 선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으나,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남녀’, ‘이들딸’을 대신하여 ‘여남’, ‘딸이들’을 쓴다고 해도 여전히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는 단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성차별어 선정에서 고려할 점

이상의 표현들은 <성평등>에서 성차별 언어로 간주되어 그 대안어가 제시된 것들이다. 이중 몇몇 단어는 그 단어의 성격이 성차별적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이 있다. 언어적 관점에서 그러한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몇몇에 대하여 간단히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개별 의미를 어디까지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궁(子宮) → 포궁’, ‘자(子)·양자(養子)·친생자(親生子) → 자녀·양자녀·친생자녀’, ‘분자(分子)·분모(分母) → 윗수·아랫수’<sup>11)</sup> 등이 성차별 언어로 분류된 이유는 ‘자(子)’의 의미를 ‘아들’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자의 개별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 단어들은 남성을 대표로 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전형적인 차별 언어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나, ‘子’의 훈에는 ‘아들, 남자’와 더불어 ‘사람’ 역시 포함되므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유구한 차별 언어의 역사 때문일 수도 있으나 개별 한자어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게 되면 ‘子’가

11) ‘모음(母音), 자음(子音)’의 경우도 ‘분자, 분모’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절 구조적 관점에서 자음은 모음에 기대어야 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분자, 분모’와 동일한 관점을 적용한다면 이것들 역시 성차별 언어가 될 것이다.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다 개선의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한자어 형태소의 의미 해석이 점차 불투명해져간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문제를 한층 더 제기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차별 언어로 꼽히는 ‘미망인’을 들 수 있다.<sup>12)</sup> ‘미망인’이 차별 표현인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 때문인데, ‘미망인(未亡人)’은 ‘아직 죽지 못한 사람’으로, 기원적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었던 중국의 순장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이해하는 가부장제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신지영 2018: 155).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역사를 생각하면 ‘미망인’은 분명히 차별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으나, 언중들의 언어 지식과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고려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될 수도 있다. 언어 변화에서는 단어의 의미나 내부 구조에 대한 언어 지식이 사라져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는데,<sup>13)</sup> 차별 언어를 판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이러한 류의 언어적 지식에 대한 고려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가 차별 언어 개선에 있어서 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둘째, 비유적인 표현의 차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효자상품’, ‘처녀작’과 같은 단어는 성차별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효자상품’은 ‘마치 효자가 부모님에게 잘 하듯이’ ‘매우 잘 팔리는 상품’을 의미하며, ‘처녀작’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인 ‘처녀’가 ‘아무도 손대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파생되어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 이러한 비유를 만들어내게 된 본래의 의미가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언어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12)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에서는 ‘미망인’을 ‘고 000씨의 배우자’로 순화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를 가리킬 수 있도록 바꾸었다. ‘미망인’이 ‘남편을 잃은 여성’만을 가리킨 것에 비하여 ‘고 000씨의 배우자’는 더 넓은 의미를 중립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어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어 표현의 길이가 더 길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는 평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는 순화어 연구의 관점에서 순화어 선정의 원칙이 더 고민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 ‘방석(方席)’이 원래는 네 각이 있는 네모난 것을 가리키다가 ‘바닥에 깔고 앉는 도구’를 가리키게 된 것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본래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유적으로 사용된 의미이기 때문에 원 의미의 직접적인 성질이 분명하게 와닿지 않게 되므로, 차별 표현이 차별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장애 관련 차별 언어를 사례로 들면 비유적인 표현의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앓듯’과 같은 장애인 차별 속담은 매우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이정복 2021), 이것들은 장애인과 무관한 보도 내용에서 빈도 높게 사용된다. 혹자는 이러한 비유 표현의 사용 역시 언어의 관습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기 어렵다. 해당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차별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감수성을 여러 분야의 차별 언어에 대입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성차별 언어 역시 그러한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4. 대안어의 성격과 대안어 선정 시 고려할 점

이번 장에서는 <성평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어의 성격을 분석하고, 대안어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한두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 1) 대안어의 유형별 분류

우선 대안어들이 원 성차별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속성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들을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성평등>의 대안어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원 표현의 차별적 속성을 제거하고 있다.

첫째는 성별을 제거함으로써 성별 표현을 중성화 시키는 것이며(12가), 둘째는 성별을 통합함으로써 성별을 중성화 시키는 방법이다(12나). 셋째는 한쪽 성별에 대한 표현에 나머지 성별을 추가하여 성별 표현을 대칭화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12다), 마지막으로 직접 차별적 속성을 제거하기보다 제3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있다(12라). 대부분의 대안어들은 네 번째 방식, 즉 제3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대안어를 형성해 내고 있다.

(12) 가. 성별 표현의 중성화: 성별 제거

여직원 → 직원,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그녀(女) → 그

나. 성별 표현의 중성화: 성별 통합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편부·편모 → 한부모

다. 성별 표현의 대칭화

자·양자·친생자 → 자녀·양자녀·친생자녀

라. 제3의 표현으로 전환

스포츠맨십 → 스포츠정신, 효자상품 → 인기상품, 자궁 → 포궁, 자매

결연 → 상호결연, 처녀작 → 첫 작품,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승차차

장, 분자·분모 → 윗수·아랫수, 김여사 → 운전미숙자 등

다음으로 대안어들의 단어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안어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인지를 <표준>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3)

대안어가 모두 <표준>에 수록된 경우	자궁 → 포궁, 유모차 → 유아차, 미술아 → 조산아, 여직원 → 직원,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그녀(女) → 그, 자 → 자녀,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부녀자 → 여성
대안어가 <표준>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포츠맨십 → 스포츠정신, 효자상품 → 인기상품, 자매결연 → 상호결연, 처녀작 → 첫 작품, 수유실 → 아기휴게실, 분자·분모 → 윗수·아랫수, 몰래



	카메라 →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 디지털 성범죄, 편부·편모 → 한부모, 미혼 → 비혼, 김여사 → 윤전미 숙자,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승차장, 저출산 → 저출 생, 경력단절여성 → 고용중단여성, 낙태 → 임신중단, 버진로드 → 웨딩로드
--	---

대안어들은 ‘포궁, 유아차’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던 단어를 다시 활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기존에 단어 자체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들이 많다. 그것은 대안어들이 주로 합성어나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합성어나 구를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표준>에 수록되어 있어도 그것들의 결합형이 직접 실려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된다. 대안어는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과하게 낯선 단어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새로 만들어진 말이 익숙한 형태소들로 구성된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정착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안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비교적 친숙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 2) 대안어 선정에서 고려할 점

여기에서는 대안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최근에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대안어인 ‘비혼’과 ‘저출생’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1) 대안어의 의미 변화 문제: ‘미혼’과 ‘비혼’의 경우

‘미혼’의 대안어로서 ‘비혼’은 ‘미혼’이 가지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혼인중심주의적 사고를 제거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성평등>(2020)에서 ‘미혼, 미혼모, 미혼부’를 ‘비혼, 비혼모, 비혼부’라고 개선하기를 권고한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과 같은 법령 내의 ‘미혼’ 관련

표현을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샘>에 수록되어 있는 ‘비혼’과 그 관련어의 뜻을 살펴 보면 ‘비혼’이 반드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14)

가. 비혼 「명사」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비혼 생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생활.

나. 비혼-남 「명사」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남성.

비혼-녀 「명사」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우리말샘>에서 (14가) ‘비혼’, ‘비혼 생활’의 ‘비혼’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음’을 뜻하는 반면, (14나)의 ‘비혼남’, ‘비혼녀’의 뜻풀이에는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뜻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비혼’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후자의 ‘비혼’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뜻풀이는 ‘비혼’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상을 일견 보여준다. 뉴스 기사나 인터넷 등을 보면 ‘비혼’이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 모두 다 사용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러한 기사 제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15) ‘42세’ 신봉선 “비혼 아냐, 마음 맞는 남자 있음 결혼할 것”<sup>14)</sup>

위의 기사에서 ‘비혼’은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음’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즉 ‘비혼’은 다의어적인 용법으로 ‘미혼’과 유의 관계를 가지며 ‘기혼’과 반의 관계를 보이는 ‘결혼을 하지 않음’의 의미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텐아시아(2021.11.04), <https://tenasia.hankyung.com/tv/article/2021110467354>

차별 표현의 대안어 혹은 순화어로서 ‘비혼’의 적절성은 기존 ‘미혼’의 대체어로 사용될 때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음’의 의미가 확대된다면 중립적 대안어로서의 ‘비혼’의 위치는 불안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안어가 기존의 차별 언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어 표현과는 다른 특수한 의미를 획득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안어의 의미 분화 가능성은 대안어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sup>15)</sup>

## (2) 차별어와 대안어의 완전 대체 가능성 문제: ‘저출산’과 ‘저출생’의 경우

‘저출생’은 ‘저출산’의 대안어로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저출산’을 대신하여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에서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야 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샘>에서는 ‘저출생’과 ‘저출산’을 축자적인 관점에서 뜻풀이에 차이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

(16) 가. 저-출산 「명사」 아이를 적게 낳음.

나. 저-출생 「명사」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음.

여기에 더하여 ‘출산율’과 ‘출생율’이 서로 다른 지표를 가리킨다는 언급들도 적지 않다. (17)의 백과사전의 뜻풀이에서도 양자는 다른 성격의 용어이며, (18)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두 지표가 서로 다른 측정을 하기 위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비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는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의미 분화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어 선정이 실제로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으며, 필자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만 ‘비혼’과 같이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새로 조어된 말은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들에 비하여는 의미 변화의 측면에서 역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안어의 의미 분화 및 기존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 재편성 역시 대안어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7) 가. 출산율: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1년간 낳은 출생아 수를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sup>16)</sup>

나. 출생율: 한 사회의 출생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한 해 동안 인구 천명 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sup>17)</sup>

(18) “많은 나라에서 자료 수집의 편의상 여성을 중심으로 출산율을 계산한다. 하지만 출산율은 남성을 대상으로도 산출이 가능하다. 젠더 측면에서 출산이란 용어는 이를 여성만의 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이지 지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출산율은 젊은 세대가 몇명의 자녀를 낳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반면, 출생률에는 한가지 요인이 더 추가된다. 그것은 젊은 세대의 인구 규모다. 즉, 젊은이들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도, 독박육이나 경력단절이 깨트려지지 않아도 젊은 세대의 규모가 늘면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출생률은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젊은 세대의 규모가 줄어들면 출생률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몇이나 낳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출생률이 아닌 출산율을 사용해야 한다.”<sup>18)</sup> (밑줄은 필자)

(18)은 출생률과 출산율이 학술적 의미에서는 서로 동의어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출생률이 기간 내 출생아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출산율은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생과 관련하여 사회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출생률보다는 출산율이 더 유용한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용어의 관점에서 기존의 ‘출산율’을 ‘출생율’로 대체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상 용어로서 ‘출산율’을 ‘출생율’로 대체

16) 인터넷 두산백과 “출산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32973&cid=40942&categoryId=31608>

17) 인터넷 두산백과 “출생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7771&cid=40942&categoryId=31609>

18) <‘저출생’으로는 ‘저출산’ 못 막는다>(최슬기, 한겨레신문, 2018.10.2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7224.html>

하는 경우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으나, 대안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양자의 기본 의미가 오해를 야기할 만한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 4. 결론

본고에서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에서 제안한 성차별 언어와 그 대안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성차별 언어와 대안어 선정 시의 고려 사항을 일부 살펴보았다. ‘비혼’과 같은 신조어적 용어가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은 물론 우리 생활의 일상 대화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언어 생활의 문제점과 한계를 끊임없이 살피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언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으려면 차별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더불어 기존의 언어 표현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좋은 대안어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어가 어떠한 언어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부분적인 접근이 그러한 노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더 체계적인 접근을 후고로 기약하는 바이다.

19) 그러나 반드시 정책 용어가 학술 용어와 동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재인 외(2019: 279~285)는 정책 용어를 공식적으로 ‘저출생’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국책연구원 보고서인데, 여기에 따르면 정책 용어가 반드시 학술 용어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이 주장되었다. 인구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 통계, 분석에서는 ‘출생율’이나 ‘출산력’과 같이 엄밀한 인구학 용어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 대국민 홍보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저출산’ 대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배은경 2021: 144~145). 이러한 점은 차별적 요소만을 제거한 ‘동의어’를 찾아 대안어를 선정해야 한다는 언어적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차별 언어의 개선이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수긍할 수 있는 점도 적지 않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박동근,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차별 의식 연구』, 『입법정책』 4-1,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57~88쪽.
- \_\_\_\_\_, 『법률 조문의 차별적 표현 연구』, 『한말연구』 34, 한말연구학회, 2018, 73~103쪽.
- \_\_\_\_\_, 『성차별적 표현 논의와 역차별 문제』,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157~165쪽.
- 박은하,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성차이어와 성차별어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정일, 『차별어의 언어학적 연구』,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2004.
- 박혜경,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배은경,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 연구』 21-2, 한국여성연구소, 2021, 137~186쪽.
- 신지영, 『언어의 줄다리기』, 21세기북스, 2018.
- 안소진, 『대명사 그녀의 텍스트 유형별 쓰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의미학회, 2015, 123~146쪽.
- 이정복, 『언론 기사에 쓰인 장애인 차별 속담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배달말』 69, 배달말학회, 2021, 147~181쪽.
- \_\_\_\_\_,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2007, 257~300쪽.
- \_\_\_\_\_,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2017, 9~31쪽.
- \_\_\_\_\_,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2013.
- 조태린,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2011, 388~410쪽.
- \_\_\_\_\_, 『한국의 언어 순수주의와 국어 순화』,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회, 2019, 115~139쪽.

### 2. 보고서

- 나윤정,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17.
- 박철우,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2018.
- 안상수·백영주·양애경·강혜란·윤정주,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유재연·변수정·이소영·최인선·배은경·이지연,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이수연,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_\_\_\_\_, 『일상 속 성차별 언어 표현 현황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조태린,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2006.

### 3. 인터넷 자료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06.29)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63422?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63422?tr_code=snews)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2019.06.27)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2107?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2107?tr_code=snews)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2020.09.01)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3846?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3846?tr_code=snews)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Expression in Korean Sexist Language

– For “Gender Equality Words” in the <Seoul Gender Equality Language Dictionary>(2018-2020) –

Kim So-yeong\*

As social sensitivity to discrimination increases, the work of presenting alternative words for discriminatory language is actively taking place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Gender discrimination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areas where the movement to improve discriminatory language is active, and <Seoul Gender Equality Language Dictionary>(2018-2020), which has been published by the Seoul Women's and Family Foundation, is also such. Sexist words pointed out as problems here are largely divided into types that use male-centered language expressions, types that reflect stereotypes about men and women, and types that need to change social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among women-related words. On the other hand, alternative words of gender discrimination are mainly used as another words to replace existing gender discrimination words, and gender removal, gender integration, and expression symmetry are also used as alternative words. In selecting a discriminatory word, how fa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constituting the word and whether the differentiation of figurative expressions can be recognized can be related issu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

---

\* Kwangwoon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Assistant Professor



alternative wo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alternative word can mainta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existing discriminatory language and whether the alternative word itself is likely to differentiate meaning. Understanding the nature of alternative words for discriminatory languag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valuating alternative words in the future and discussing the direction of creating new alternative words.

**Key words**: alternative words, discriminatory language, refining words, sexist language, sexual discrimination, unmarried, 'few birth'

